

강원대학교 교수회 규정 일부 개정 (안)

1. 개정 이유

- 가) 학칙 제18조 1항, “캠퍼스별로 분회를 둔다”가 교수회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나) 학칙 제4절 및 교수회 규정이 (전체)교수회와 단과대학(법전, 의전) 교수회 사이의 관계를 특정하지 않아, 추후 교수회비 교부 등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
- 다) 교수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하는 경우에만 서면투표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전체)교수회의 소집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황임.
- 라) 교수사회에서 중요한 단위이며 여교수들의 대표기구인 ‘여교수회’를 교수회에 속한 기구로 존치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 가) 교수회의 캠퍼스별 분회를 둬.
- 나) (전체)교수회, 캠퍼스별 분회, 단과대학 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사이의 관계를 명시함.
- 다) 교수회의 심의의결 사항들 중 총장과 교수회 회장 등 임원의 신임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서면투표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체 교수 투표를 할 수 있게 함.
- 라) 교수회 내에 여교수회를 설치하고 여성 전임교원 부회장 1인을 여교수회가 추천하도록 정함 (현재 규정에는 여성 전임교원 부회장 1인을 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3. 관련 부서 협의 등

- 가) 관련법령: 학칙 제18조 등을 참고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교수회 대의원회 심의 의결을 거침.
- 라) 기타: 해당사항 없음.

강원대학교 교수회 규정 일부개정(안)

강원대학교 교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4호 "총장 평가 및 신임에 관한 사항"을 "총장 신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조5호와 6호를 각각 6호와 7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총장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면투표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교수회에 총회, 캠퍼스별 분회, 단과대학 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를 둔다.
- ② 이 대학의 성평등 문화 진작을 위해 여교수회를 둔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캠퍼스별 부회장은"을 "부회장은"으로, "이"를 "여성 전임교원 부회장은 여교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되고, 이"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수회의의 출석회원이 제2항의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을 "제3조 중 제1호와 제4호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로 한다.

제18조 중 "교수회는"을 "교수회와 여교수회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요구"를 "요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조제3항제5호"를 "제4조제3항제4호"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1·2·3 (생략)</p> <p>4. <u>총장 평가 및 신임에 관한 사항</u></p> <p><신설></p> <p>5. (생략)</p> <p>6. (생략)</p> <p>제4조(대의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② (생략)</p> <p>③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 3. (생략)</p> <p>4.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p> <p><신설></p> <p>5. (생략)</p> <p>④ (생략)</p> <p>제5조(조직) <신설></p> <p><신설></p> <p>① (생략)</p> <p>②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p>	<p>제3조(기능) 1·2·3 (현행과 같음)</p> <p>4. <u>총장 신임에 관한 사항</u></p> <p>5. <u>총장 평가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4조(대의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0-</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5조제4항에 따른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p> <p>5. 제13조제3항에 따른 서면투표,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조직) ① <u>교수회에 총회, 캠퍼스별 분회, 단과대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의학전문대학원교수회를 둔다.</u></p> <p>② <u>이 대학의 성평등 문화 진작을 위해 여교수회를 둔다.</u></p> <p>③ (현행 제1항과 같음)</p> <p>④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p>

<p>제9조(부회장의 선출) <u>캠퍼스별 부회장은 캠퍼스별로 선출하되 그 방법은 캠퍼스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대의원회의에서 따로 정한다.</u></p>	<p>제9조(부회장의 선출) <u>부회장은-----</u> <u>----- 여성 전임교원 부회장은 여</u> <u>교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되고, 이 --.</u></p>
<p>제13조(교수회의의 성립 및 의결) ①·② (생략)</p> <p>③ <u>교수회의의 출석회원이 제2항의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u></p>	<p>제13조(교수회의의 성립 및 의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3조 중 제1호와 제4호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u></p>
<p>④ ~ ⑥ (생략)</p> <p>제18조(운영) <u>대학(원) 교수회는 교수회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원 선출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8조(운영) <u>대학(원) 교수회와 여교수회는 -----</u> <u>-----.</u></p>
<p>제21조(재정) ① (생략)</p> <p>② <u>교수회는 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에 <u>요구</u>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21조(재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교수회는 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에 <u>요청</u>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강원대학교 교수회 규정 (개정안)

굵은 글씨 부분이 추가되는 내용임

제정 2017. 5. 15. 제158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학칙 제18조에 따라 강원대학교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수회

제2조(구성) 강원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는 강원대학교(이하 "이 대학"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교수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수회 회장 등 임원의 신임에 관한 사항
2. 교수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교권 수호 및 교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총장 평가 및 신임에 관한 사항
- 5. 총장 평가에 관한 사항**
6. 학교 운영 및 발전에 관련된 중요사항
7. 그 밖의 교수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4조(대의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수회 회장 및 부회장과 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교수회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③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강원대학교 학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수회 회장이 교수회의에 부의하려는 사항
2.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수회 회장 선출규정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장직을 승계할 부회장의 지명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24항에 따른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서면투표,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의장이 부의하거나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④ 대의원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조직) ① 교수회에 총회, 캠퍼스별 분회, 단과대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의학전문대학원교수회를 둔다.

② 이 대학의 성평등 문화 진작을 위해 여교수회를 둔다.

③ 교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및 위원회를 둔다.

④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제54호에 따라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원 및 임원의 자격) ①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캠퍼스별 1인, 여성 전임교원 1인)

3. 사무총장 2인(캠퍼스별 1인)

4. 감사 2인(캠퍼스별 1인)

② 교무회의 구성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부속기관장이 아닌 연구소 소장, 센터장 및 학과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수회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은 평의원회 의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수회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수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전체교수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며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그 선출은 대의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회장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회장의 임기 및 보선) ①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부회장의 선출) 캠퍼스별 부회장은 캠퍼스별로 선출하되 그 방법은 캠퍼스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여성 전임교원 부회장은 여교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되고,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대의원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총장의 선임) 사무총장은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감사의 선출과 임기) ① 감사는 캠퍼스별로 1인을 평교수 중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교수회를 대표하며, 제4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 등에 따라 민주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대의원회의에서 승계자를 지명하기 전까지 연장자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춘천캠퍼스 부회장은 회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춘천캠퍼스 직무를 대행하고, 삼척캠퍼스 부회장은 삼척캠퍼스 분회 회의를 주재하며 소집과 의결은 교수회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교수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삼척캠퍼스 사무총장은 삼척캠퍼스 분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교수회의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교수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모든 교수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교수회의의 성립 및 의결) ① 교수회의는 재적교수(재적회원 중 파견, 휴직, 출장, 휴가, 수업, 진료 중인 자는 제외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교수회의는 제1항에 따라 회의가 성립하고, 재적교수 5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교수회의의 출석회원이 제2항의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조 중 제1호와 제4호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의 심의·의결에 의해** 서면투표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서면투표 혹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의 경우에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수회 회장 또는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교수회의에서 직접·비밀 투표로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수회의는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① 교수회 회장은 대학재정 운영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제15조(구성) 각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 교수들로 구성되는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교수회를 둔다.

제16조(기능) 대학(원)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학(원) 교수회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신임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교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여론수렴 및 검증에 관한 사항
4.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
5. 교수평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소속 교원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대학(원)장 또는 재적전임교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임원 및 선출) ① 대학(원) 교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 ② 회장은 대학(원) 교수회의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 의원이 될 수 있다.
- ③ 부회장 및 총무는 소속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임원의 자격은 제6조제2항에 준한다.

제18조(운영) 대학(원) 교수회와 **여교수회**는 교수회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원 선출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교수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9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교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교수회 회장을 선거할 수 있으며 교수회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이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더라도 회원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제2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교수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적정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교수회는 회원이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의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적정절차를 거쳐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기타

제21조(재정) ① 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수회원의 회비,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교수회는 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에 요구요청할 수 있다.

③ 교수회는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회계연도) 교수회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2017. 5. 15. 규칙 제15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교수회 설립 전까지의 관련 사무는 평의회에서 주관한다.